

심 판

사 건 [redacted] 성년후견 개시

청 구 인 [redacted]

[redacted]

[redacted]

대리인 법무법인 태유 담당변호사

[redacted]

사 건 본 인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주 문

1. 사건본인에 대하여 성년후견을 개시한다.
2. 사건본인의 성년후견인으로 청구인을 선임한다.
3. 가. 사건본인의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없는 사건본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는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성년후견인은 사건본인의 법정대리인이 된다.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의 범위는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성년후견인이 사건본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는 별지 기재와 같다.

4. 성년후견인은 이 심판확정일로부터 2월 이내에 사건본인의 재산목록[기준일: 이 심판 확정일, 사망자 등 재산조회서비스(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또는 상속인금융거래 조회 결과를 첨부할 것]을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5. 성년후견인은 이 심판확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을 시작으로 매년 후견사무보고서(기준일: 매년 이 심판확정일과 같은 월, 일)를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후견인은 재산조사와 목록작성을 완료하기까지는 긴급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그 재산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943조). 따라서 후견인은 주문 제4항에 따라 재산목록 제출의무를 반드시 이행하기 바랍니다.

I.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

취소권 제한 없음

II.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의 범위

법정대리권 제한 있음

아래 사항은 성년후견인의 대리권 행사에 법원의 허가를 필요로 함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2. 의무만을 부담하는 행위
3. 부동산의 처분 또는 담보제공행위
4. 상속의 단순승인, 포기 및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
5. 소송행위 및 이를 위한 변호사 선임행위

III.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

아래 사항에 관하여 피성년후견인이 스스로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 성년후견인이 결정권을 가짐

1. 의료행위의 동의
2. 거주·이전에 관한 결정
3. 우편·통신에 관한 결정
4. 사회복지서비스 선택 또는 결정
5. 기타 사항

다만,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성년후견인의 대리권 행사 등에 법원의 허가를 필요로 함.

- 1) 민법 제947조의2 제2항: 피성년후견인을 치료 등의 목적으로 정신병원이나 그밖의 다른 장소에 격리하려는 경우
- 2) 민법 제947조의2 제4항: 피성년후견인이 의료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거나 상당한 장애를 입을 위험이 있을 때 그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
- 3) 민법 제947조의2 제5항: 피성년후견인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 또는 그 대지에 대하여 매도, 임대,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임대차의 해지, 전세권의 소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